

[자료집]



# 사단법인 자치분권연구소 정기총회 / 2020년

2020년 6월 17일(수) 오후3시 /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



## 식 순

- 내빈소개
- 성원보고
- 개회사 및 이사장 환영사
- 김두관 상임고문 격려사

## ○ 안 건

제1호. 정관 일부개정의 건

제2호. 2019년도 사업실적(결산) 승인의 건

제3호. 2020년도 사업계획(예산) 승인의 건

제4호. 임원(상임이사) 승인의 건

## ○ 폐 회

## 안건 제1호. 정관 일부개정의 건

제출연월일 : 2020. 6. 17

제 출 자 : 상임 이사회

### 1. 주문

- (사)자치분권연구소의 정관 일부개정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.

### 2. 주요골자

- 2019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는 모든 지정기부금단체(종교단체 제외)가 「법인세법」 상 기부금단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, 의무이행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야 함.

[법인세법 시행령 §39]

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,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,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.

- 삽입내용

제45조 <결산/결산공개> 이사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,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 및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 결산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### 3. 개정 정관[안]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4조 &lt;세입/세출예산&gt; 본 법인의 세입/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제45조 &lt;결산&gt; 이사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	<p>제44조 &lt;세입/세출예산&gt; 본 법인의 세입/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제45조 &lt;결산/결산공개&gt; 이사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, <u>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 및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 결산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</u></p>

### 5. 관계정관

- 제49조 <정관개정> 이 정관은 상임이사회에서 재적 2/3 찬성으로 결의하여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/3 찬성으로 의결하여 개정한다.

※ 상임이사회 : 2020.3.23.일 개최하여, 온라인 의결함.

## 안건 제2호. 2019년도 사업실적(결산) 승인의 건

### 1. 주문

- 본 연구소의 201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제출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을 요청드립니다.

### 2. 제안이유

- 정관 11조에 의거 본 연구소가 수행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, 연수 진행, 광명시 자치분권기본계획 수립 용역, 강원도주민자치박람회 정책토론회 진행 등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감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함.

### 3. 관련정관

- 제11조 <총회의 권한 및 의결사항>  
총회는 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아래 사항들을 토의, 결정한다.
  1. 임원의 구성
  2. 사업계획의 승인
  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4. 상임이사회나 회원 1/3이상의 요구로 회부된 주요 사항
  5. 재산의 매도, 증여, 담보, 대여, 취득 기채 등에 관한 사항
  6. 법인의 해산 및 합병

### 4. 참고자료

- 붙임1. 사업실적(결산) 및 사업계획 예산(안)
- 붙임2. 감사 의견서

# 2019년 사업실적 및 결산서

## 붙임1. 201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

### 가. 사업실적

사업명	사업기간	사업내용	소요예산	비고
□ 사업계획보고 및 신년하례회	2019년 1월25일 오후4시	○ 2019년 신년하례회 /약 40명 - 사업계획 등 보고회 - “대한민국 자치분권 어디까지 왔나” 민형배 BH사회정책비서관 특강	100만	사무처주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
□ 2018년 사업실적 및 2019년사업계획제출	2월	○ 사업실적 및 계획 제출(결산/예산)	비예산 사업	사무처주관 행정안전부
□ 비영리법인설립 허가 증 재교부 신청 및 정관 변경허가 신청(승인)등기	1~2월	○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○ 정관개정에 따라 변경신청(승인) 및 등기 (주소지변경 등)	100만	사무처주관 행정안전부 법원등기
□ 반려동물 사회화를 위한 정책협약식 (MOU 체결)	1월~12 월	○ 반려동물사회화를 위한 정책 협약식 - 연구소 동물복지위원회(위원장 하병길)와 서울시의회(의장 신원철),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(학장 우희중) - 추진방향 : 반려동물의 사회화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(강아지유치원) 등	비예산 사업	동물복지위원 회 주관
□ 반려동물 등록 캠페인 공동주관 (서초구/부산진구)	3월30일	○ (사)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공동행사주관 - 3월30일(서초구 양재 시민의 숲) - 4월6일(부산시민공원)	비예산 사업	동물복지위원 회 주관
□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촉진을 위한 등록 캠페인	4월~5월	○ (사)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와 연구소가 동물 등록을 통한 의료보험도입 촉구 캠페인 추진. 4~5월중(부산광역시, 순보, 수 의사회,펫닥, 연구소 등 협약으로 매칭펀 드를 조성, 캠페인 기간내에 등록비용을 할인 적용하는 캠페인 전개	2,500만	동물복지위원 회 주관
□ 관악구 민선7기 1주년 기념 주민자치아카데미 행사 용역 수행	7.1~7.10	○ 관악구 민선7기 1주년 기념행사 - 주민자치아카데미 용역 “ 자치하자! 청청 토크쇼” 수행 - 김두관의원(전 행정부장관)과 박준희 구청장의 대담 형태로 진행	812만	지역사회교육 위원회 주관
□ 사)자치분권연구소& 강원도의회 업무협약 (MOU)체결	7.12	○ 강원도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적 관계 형성 및 교류	비예산	사무처 주관
□ 광주시 도시농업활성 화 방안을 위한 중 합 계획수립 연구 (완료)	4.2~7.30	○ 경기도 광주시 도시농업활성화 방안을 위한 종합계획수립(완료) - 내용: 연구소 도시농업위원회에서 처음 수행한 연구로 타 자치단체 계획수립 등 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.	1,700만	도시농업위원회 주관

사업명	사업기간	사업내용	소요예산	비고
□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역량강화 교육.연수 대행	8.20~9.6	○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역량강화 제주연수 대행/3일	1,400만	사무처 주관
□ 독도방문	7.25~27 (2박3일)	○ 사무처 하계연수/워크숍 진행 한일간의 독도 문제와 주변 국가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독도를 방문하여, 그 의미를 더 하고자 했음.	10만	사무처 주관
□ 지방자치(일본서적)번역, 출판사업	4.19~12.31	○ 최근 지방자치 현안인 주민자치와 의회 개혁 등 관련 일본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고자 함. - 현재 총5권 기본번역 작업 완료	500	편집위원회 /김영철 상임이사
□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용역(완료)	7.15~10.10	○ 광명시 자치분권기본계획 수립 용역 (완료) 의의: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 최초로 자치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, 핵심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운영 등 이 기본틀을 이룸	1,900만	지역사회교육위원회
□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정책토론회 개최	11.21	○ 주최 강원도/주관 강원도주민자치회 강원도 자치분권협의회/ 주민자치활성화 및 자치역량강화를 주제로 토론회 진행 제1회 / 강원도 속초실내체육관	960만	사무처 주관
□ 지방정부경청투어 (이재수 춘천시장 편)	11.22	○ 자치분권 메카 춘천시 활동현황 공유	비예산 사업	사무처 주관
□ 연구소 홈페이지 Renewal 작업	10.1~	○ 연구소 홈페이지 콘텐츠 리모델링 진행 <a href="http://www.selfgo.org">http://www.selfgo.org</a>	100만	홍보위원회
□ 사회공헌사업 (LDE 전등 지자체 지원 활동)	8.29 10.8	○ 에너지복지사업 은평구청에 전달식 (제1차 450개, 2차750개) - 기부업체 (주)솔라루체 대표 오기철	비예산 사업	사무처 주관
□ 2019년 사업보고회 및 송년회	12.12	○ 2019년도 연구소 사업보고회 및 창립 16주년 기념 송년회(소담골)		사무처 주관

## 나. 2019년 수입·지출결산서(단위: 원)

### 1) 수입내역

수입항목	수입 예산액	수입 결산액	증감내역	비고
이월금	4,139,162	4,075,352	△63,810	2018.12.31현재
회비	32,000,000	30,221,140	△1,778,860	CMS납부현황 (2019년)
후원금	3,000,000	52,626,472	49,626,472	기부금(용역 등) 특별기부(현물)포함
기타수입	225,000,000	67,365,000	△157,635,000	사업수입(용역 등)
이자	10,000	7,534	△2,466	
차임금		0	△2,499,550	
<b>합계</b>	<b>264,149,162</b>	<b>154,295,498</b>	<b>△109,853,664</b>	

### 2) 지출내역

지출항목	지출 예산액	지출 결산액	증감내역	비고
운영비	24,000,000	47,836,505	23,836,505	사무소운영
활동비	72,000,000	44,752,254	△27,247,746	용역인건비 등
행사운영비	159,936,572	53,397,080	△106,539,492	사업비 사회공헌사업비 포함
19년 이월금	8,212,590	8,212,590	0	현금(채권채무포함)
<b>합계</b>	<b>264,149,162</b>	<b>154,198,429</b>	<b>△109,950,733</b>	



## 붙임2. 2019년도 감사의견서

## 감 사 의 견 서

2019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에 대한 감사 결과, 사업실적서는

- 경기 광명시 자치분권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은 전국 최초로 주민 자치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기본틀을 본 연구소에 서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으며,
-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, 연수 프로그램 운영 은 연구소가 아카데미 사업을 의욕적으로 수행한 유의미한 결과라고 사료 되며,
- 제1회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주관은 상대적으로 주민자치가 취약한 강원도에 발전적 동기부여를 제공한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합니다. 그 외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취약 한 환경속에서도 연구소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위상을 높인 한 해였다고 평가 합니다.

수지결산서는 정회원의 회비 납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연구용역 및 행사 대행 등으로 연구소 유지,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,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감사 의견을 드립니다.

(사) 자치분권연구소의 정관 제45조(결산)에 의거 감사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2020.6.17.일

감사 이 영 진

감사 김 성 욱

(날인생략)

※ 감사의견서 날인 원본 별도 보관

## 안건 제3호.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 승인의 건

### 1. 주문

- 본 연구소의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승인을 요청드립니다.

### 2. 제안이유

- 정관 제11조에 의거 본 연구소의 2020년도 주요사업으로,
  - (1) “21대 국회와 자치분권 과제” 정책토론회를 정기총회 시 진행하며,
  - (2) 주요 연구용역 예정사업으로 충남도의회 용역사업인 ‘소하천 녹조예방 연구’ 사업으로 소하천 유입수 수질개선을 통한 선제적 녹조예방에 대한 연구와 서울시의회 용역사업인 ‘빗물관리시설 실효성 향상 제도개선 방안연구’ 사업을 용역 신청중에 있으며,
  - (3) 주민자치교육사업으로 ‘주민자치학교(교육원)을 신설, 운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전문적인 주민자치교육을 진행할 강사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.
  - (4) 그 외, 연구소 정례사업인 자치분권 모범사례를 살펴보고 널리 확산하기 위한 “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” 「지방정부 경청투어」 와 지방의회 역량강화 연수, 사회공헌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

자세한 사업내용은 붙임자료. 2020년도 사업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3. 관련정관

- 제11조 <총회의 권한 및 의결사항>  
총회는 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아래 사항들을 토의, 결정한다.
  1. 임원의 구성
  2. 사업계획의 승인
  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4. 상임이사회나 회원 1/3이상의 요구로 회부된 주요 사항
  5. 재산의 매도, 증여, 담보, 대여, 취득 기채 등에 관한 사항
  6. 법인의 해산 및 합병

## 붙임.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

##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

## 가. 사업계획

사업명	사업기간	사업내용	소요예산	비고
□ 2019년 사업실적 및 2020년 사업계획 제출	2월	○ 사업실적 및 계획 제출(결산/예산)	비예산 사업	행정안전부
□ 4.15총선 유권자 시민 행동“후보자에게듣다”	3월~4월	○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총선 후보자를 찾아가 인터뷰 진행 - 2020 총선 핵심의제 질문	100만	시민사회연 대체 공동
□ 정기총회 및 준계 자치분권 토론회	6월	○ 2020년 정기총회 / 사업보고회 ○ “21대 국회와 자치분권 과제”	100만	국회 의원회관
□ 강원도 보조금사업 교육, 아카데미 대행	4월~11월	○ 호민관 교육/자치분권아카데미	3,500만	사무처 주관
□ 지방정부 경청투어	4월~12월	○ 자치분권, 주민자치 및 모범 행정사례 “단체장에게 듣는다” 경청투어 행사 (분기별)	비예산 사업	사무처 주관
□ 사회공헌사업 - LED전등 교체사업	3월~12월	○ 에너지절감, 조명환경개선, 가계경제 도움 등 사회공헌사업 일환 -대상:3개구청외(영등포구청, 파주시, 노원구) -내용: 해당 자치단체와 전달식 진행 -약1,500가구(자치단체500가구 약7천만원 상당액)	2,400만	에너지복지 위원회 주관
□ 서울시의회 용역사업 빛물관리시설 실효성향상 제도개선 방안연구	5월~7월	○ 서울시 빗물관리시설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지역맞춤형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용역	3,000만	사무처 주관
□ 충남도의회 용역사업 소하천 녹조예방 연구	7월-9월	○ 소하천 유입수 수질개선을 통한 선제적 녹조예방에 대한 연구(김창수 기술사)	2,000만	사무처 주관
□ 주민자치교육사업 -주민자치학교(교육원) 운영으로 주민자치교육	6월~12월	○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전문적인 주민자치교육을 진행할 강사진 및 프로그램 운영	3,000만 2,000만	주민자치 학교
□ 해외 주민자치 운영 사례 연구사업 [번역 및 출판]	4월~5월	○ 주민자치 활성화 및 지방의회 혁신 등을 위한 해외 주민자치 운영사례의 연구 및 번역 출판사업[계속사업](*2019년~일본서적 번역작업 지속)	600만	편집위원회 주관
□ 광명시 마을공동체 운영계획 수립(용역)	8월~10월	○ 경기 광명시청 마을공동체 운영계획수립 용역사업	3,000만	사무처 주관
□ 지역조직 정비[계속사업] (자치분권지역연대 및 전국연대 구성)	1월~12월	○ 전국 자치분권연구소 지역조직정비 -1단계: 각 지역 준비위원회 구성 -2단계: 지역연대 및 전국연대출범	300만	사무처 주관
□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·연수 사업	3월~11월	○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·연수 프로그램	3,000만	사무처 주관
□ 연구소 하계수련회	7~8월	○ 연구소 회원 하계수련회 - 멤버십 강화 등 회원 친목도모	500만	사무처 주관
□ 도시농업활성화 세미나	9월	○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세미나 개최	100만	도시농업위 원회 주관
□ 2020 송년회	12월	○ 2020연구소 운영사업 리뷰 및 송년회	비예산	사무처

## 나. 2020년 수입 · 지출 예산서(단위 원)

### 1) 수입내역

수입항목	수입 예산액	산출근거	비고
이월금	8,212,590		2019년 재무제표참고
회비	33,600,000	현재 약 30,000,000(2019기준) 향후 회원증원계획 1) 10만원*10명* 6개월= 600만원 2) 5만원*10명* 6개월= 300만원 3) 3만원*30명* 6개월= 540만원 4) 2만원*20명* 6개월= 240만원 소계 16,800만원	CMS회비
후원금	5,000,000	50만원*10명=500만원	후원금 (행사지원 등)
사업수입	225,000,000	용역발주예상금액 1) 35,000만원*1식= 35,000만원 2) 30,000만원*3식= 90,000만원 3) 20,000만원*5식= 100,000만원	용역 등 사업수익
이자	10,000		
합계	271,822,590		

### 2) 지출내역

지출항목	지출 예산액	산출근거	비고
운영비	34,000,000	1)사무실 기본 운영비 284만원 * 12개월 = 3,400만원	19년재무제표 참고
활동비	157,000,000	인건비 250만원*12*5명=15,700만원	순수연구용역 인건비
사업비	70,000,000	용역사업추진 1)10과제 * 1,000만원=1억원 2)1과제 * 3,000만원=3,000만원 3)1과제 * 2,500만원+ 2,500만원 4)1과제 * 1,000만원=1,000만원	용역사업비
2020년 이월금	10,822,590		
합계	271,822,590		

## 안건 제4호. 상임이사 선출의 건

제출연월일 : 2020. 6. 17

제 출 자 : 상임 이사회

### 1. 주문

이규희 상임이사(전. 국회의원/20대)의 사의 의사에 따라 다음 후보자의 선출직 상임이사 후보자를 원안대로 선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.

#### ○ 후보자 최동규



1960.9.19. 서울

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

경희대학교 행정학 박사 수료

행복한 마포 포럼 대표.

사)자치분권연구소 에너지복지위원회 위원장

전. 국회 정책연구위원

전.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실 실장

전.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

### 2. 제안이유

- 정관 18조에 의거 본 연구소의 상임이사를 선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규희 상임이사의 사의에 따라, 상임이사회에서 최동규 상임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사항임.

### 3. 정관규정

- 제18조 <임원의 선출> 개정안
  1. 이사장, 감사, 상임이사 등 선출직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2. 선출직 임원의 궐위 시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.
  3. 소장 및 부소장, 사무처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당연직 임원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  4. 임원 선출시 각 후보자는 사무처에 인적사항 및 경력을 총회 공고 후 3일 이내에 등록 하여야 한다. 단, 등록 후보자가 없을 시 상임이사회에서 추천 할 수 있다.

사단법인 자치분권연구소 의 장 이사장(대표이사) 신 정 훈  
이 사 김 수 영  
이 사 김 영 철  
이 사 신 선 휴  
이 사 허 대 만  
(날인생략)

○ 기타안건

○ 폐회선언

※ 첨부자료. 사)자치분권연구소 정관

참고자료 사)자치분권연구소 정관

1. 정관[2003년 12월 2일 제정(창립)]
2. 정관[2004년 2월 5일 행사부사단법인허가 제2004-3호]
3. 정관[2004년 9월 24일 1차 일부개정]
4. 정관[2005년 2월 1일 2차 일부개정]
5. 정관[2005년 7월 29일 3차 일부개정]
6. 정관[2006년 3월 10일 4차 일부개정]
7. 정관[2007년 2월 23일 5차 일부개정]
8. 정관[2012년 2월 23일 6차 일부개정]
9. 시행세칙[2013년 10월 30일 시행세칙 제정]
10. 정관[2015년 4월 27일 7차 일부개정][행사부허가시행 2015년 5월 27일]
11. 정관[2016년 7월 15일 8차 일부개정][행사부허가시행 2016년 8월 26일][등기 2016년 8월 30일]
12. 정관[2018년 10월 17일 9차 일부개정][행사부허가시행 2018년 10월 00일][등기 2019년 1월 24일]
13. 정관[2020년 6월 17일 10차 일부개정][행사부허가시행 2020년 00월 00일][등기 2020년 0월 00일]

# 정 관

2020년 6월 17일

# (사)자치분권연구소

## 정 관

#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 <명칭>** 본 연구소의 명칭은 사단법인‘자치분권연구소’라 한다.

**제2조 <목적>** 본 법인은 올바른 지방분권을 위한 각종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연구, 풀뿌리 주민참여를 위한 실천 프로그램 개발, 자치분권 지도자 양성교육 등을 통한 지방자치 역량 강화, 국제적인 평화연대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실천사업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 <소재>** 사무실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내로하며, 타 지역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**제4조 <사업>** 본 법인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.

1. 지방자치 및 분권에 대한 정책대안 개발 및 조사 연구
2. 자치분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자 양성교육
3.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각 투자기관 등의 용역·컨설팅 및 위탁사업
4. 학술토론회 개최
5. 국제 교류 및 선진 정책 연수
6. 출판물 제작, 배포 및 광고대행 사업
7. 평화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실천사업
8. 기타 연구소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

### 제 2 장 회 원

**제5조 <회원>**

1. 본 법인의 목적과 정관에 동의하는 사람과 단체는 회비납부, 입회원서 제출 등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.

2.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, 이사회원, 평생회원, 일반회원으로 구분된다.

① 정회원 :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여 이 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매월 1만원 이상의 회비를 1년간 성실히 납부하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.

② 이사회원 :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일정금액 이상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승인과 동시에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.

③ 평생회원 : 정회원이나 후원회원 중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 또



는 후원한 사람을 말한다.

④ 일반회원 : 본법인의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을 하였으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.

**제6조 <권리와 의무>**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1. 본 법인의 제반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
2. 본 법인의 정회원은 개진권,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진다.
3.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.
4. 의결기관의 결정을 준수할 의무.

**제7조 <회원의 탈퇴 및 상벌>**

1.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탈퇴원을 제출한 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2. 본 법인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.
3.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상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및 회원자격 박탈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4. (거출금의 불반환) 회원이 이미 납입한 회비나 기타의 거출금품은 반환하지 않는다.

## 제 3 장 조직과 운영

### 제1절 총 회

**제8조 <구성과 권한>**

1. 본 법인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2. 본 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.

**제9조 <총회의 소집>**

1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2.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  - ① 상임이사 1/2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  - ② 재적회원 1/5 이상이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한 때
  - ③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
**제10조 <총회개최 통지>** 이사장은 총회 7일전까지 총회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11조 <총회의 권한 및 의결사항>**

총회는 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아래 사항들을 토의, 결정한다.

1. 임원의 구성
2. 사업계획의 승인
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4. 상임이사회나 회원 1/3이상의 요구로 회부된 주요 사항
5. 재산의 매도, 증여, 담보, 대여, 취득 기채 등에 관한 사항

## 6. 법인의 해산 및 합병

**제12조 <의결제척사유>** 회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**제13조 <재소집>** 총회개최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7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**제14조 <위임>** 회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시에는 총회에 선거권 및 의결권을 위임행사 할 수 있다.

**제15조 <총회의 의장>**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임원선출 총회는 총회에 출석한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.

### 제16조 <총회의사록>

1.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 출석한 상임이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2. 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 제2절 임 원

**제17조 <임원의 종류와 정수>** 본 연구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1인
2. 소장 1인
3. 부소장 5인 이내
4. 상임이사 5인 이상
5.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
6. 감사 2인
7. 사무처장 1인

### 제18조 <임원의 선출>

1. 이사장, 감사, 상임이사 등 선출직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2. 선출직 임원의 궐위 시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.
3. 소장 및 부소장, 사무처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당연직 임원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4. 임원 선출시 각 후보자는 사무처에 인적사항 및 경력을 총회 공고 후 3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. 단, 등록 후보자가 없을 시 상임이사회에서 추천 할 수 있다.

### 제19조 <임원의 임기>

1.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2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### 제20조 <임원의 직무>

1. 이사장은 상임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.
2. 소장은 연구소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장 궐위 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3. 부소장은 소장의 업무를 지원하여 원활한 연구소 운영에 기여한다.
4. 감사는 본 법인의 재산 상황, 상임이사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총회 또는 상임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,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상임이사회, 총회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5. 상임이사회는 연구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제반시책과 사업을 계획 집행하며 이사장과 소장은 그 업무를 상임이사에게 분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**제21조 <품위유지>** 본 법인의 임원은 본 법인의 목적과 방향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조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.

## 제3절 상임이사회

**제22조 <지위>**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상임이사회를 둔다.

상임이사회는 총회가 없는 평상시 본 법인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의하는 상설의결기구이다.

**제23조 <구성>**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, 상임이사와 당연직 임원인 소장, 부소장, 사무처장, 자치분권전국연대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그 정수를 15인 이내로 한다.

### 제24조 <소집>

1. 상임이사회는 격월 정기적으로 소집한다. 다만, 이사장 및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25조 <권한>

1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2. 총회 및 제안에 관한 사항
3.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각분과 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운영에 관한 사항
5. 부설 기관 및 각분과위원회, 사무처 부서의 신설과 폐지
6. 긴급을 요하는 사항
7. 고문, 지도위원, 자문위원 위촉 및 해임에 관한 사항
8. 소장, 부소장, 사무처장 추천에 관한 사항
9.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

## 제4절 운영위원회

**제26조 <지위>** 운영위원회는 총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 법인의 운영과

사업에 관한 상설집행기구이다.

**제27조 <구성>** 운영위원회의 장은 연구소장이 겸직하며 구성은 연구소장, 부소장, 사무처장, 자치분권아카데미원장, 여성·청년·정책위원장 등 각 분과 상설위원장과 부서장 및 자치분권전국연대의 선임직 운영위원 등 20인 이내로 한다. 선임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의 정족수 이내에서 소장이 지명한다.

**제28조 <운영위원회 소집>**

1.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,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 소집한다.
2.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온라인에서 소집할 수 있다.
3. 이사장, 상임이사, 고문, 자문위원, 지도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4. 필요시 확대 운영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.

## 제5절 사무처

**제29조 <사무처장>**

1. 우리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관할케 한다.
2. 사무처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과 소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3. 사무처 직원은 사무처장의 추천과 소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.

**제30조 <분과위원장>** 본 법인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각 분과 및 위원회를 두며 각 부서장은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한다.

**제31조 <각 분과위원회>** 본 법인은 목적수행을 위하여 자치분권아카데미·여성·청년·정책위원회 구성 등 상설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학술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연구를 실행할 분야별 연구자문위원, 연구위원 등을 두며, 필요시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한다.

**제32조 <활동기구의 신설>** 본 법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,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기타의 상설 또는 한시적인 활동기구를 신설할 수 있다.

## 제6절 지역조직 및 후원회

**제33조 <지역조직 및 명칭>**

1. 본 법인은 연구, 교육사업 등 사업상 필요에 따라 법인의 지부 및 지역조직을 둘 수 있으며 본 연구소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지역자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독립적 활동을 보장한다.
  2. 조직의 명칭은 “자치분권전국연대”로 하며, 각 지역에는 “자치분권 (지역명)연대”로 하여 우선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조직하고, 향후 기초 시·군연대 및 생활지역연대를 조직한다.(예,자치분권 제주연대)
  3. 본법인의 지역 지부는 아래와 같다
- ① 천안시 두정동 630 부경빌딩 3층에 충남자치분권연구소를 둔다.(2004. 9. 24 제정)

② 제주도 노형동 906-5 한신오피스텔 618호에 제주자치분권연구소를 둔다.  
(2004. 9. 24 제정)

③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96-23 6층에 수원자치분권연구소를 둔다.

④ 마산시 서성동 68-3 미보약국 3층에 경남자치분권연구소를 둔다

4. 각 지역 연대에는 청년·여성 등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5인~10인 이내의 공동대표단을 구성하고 그 중 상임대표 1인을 선임한다. 또한 각 광역연대의 상임대표들로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단을 구성하고, 그 중에서 자치분권 전국연대의 상임 대표를 호선으로 선출한다.

5. 각 지역 자치분권연대는 사무처와 협의하여 지역에 필요한 정책토론회(연2회 이상) 등 사업을 수행한다.

6. 자치분권 전국연대 및 각 지역연대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칙을 제정·시행한다.

제34조 <후원회> 본 법인의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## 제7절 협력단체

제35조 <협력단체의 자격 및 가입>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로 자치분권 연구소 활동목적에 동의하고 함께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로 상임이사회에서 결정. 승인한다.

## 제8절 고문, 지도위원, 자문위원

제36조 <고문> 본법인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언과 지도를 받기위해 각계의 존경받은 원로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37조 <지도위원> 본 법인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언과 지도를 받기 위하여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38조 <자문위원> 본 법인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문에 응할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## 제 4 장 재산 및 회계

제39조 <수입> 본 법인은 회원의 정기회비 및 특별회비, 후원금,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.

제40조 <재산의 구분>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,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 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### 제41조 <재산의 관리>

1. 본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산목록에 편입조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2.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, 담보제공,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**제42조 <예산외의 채무부담>** 본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43조 <회계 연도>**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일로 한다.

**제44조 <세입/세출예산>** 본 법인의 세입/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45조 <결산/결산공개>** 이사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후 총회에 제출하여 승 인을 얻어야 하며,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 및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 결산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45조 <결산>** 이사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 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 다.

**제46조 <잉여금 처리>** 매년도 회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본 법인 목적사업에 사용한다.

**제47조 <환급금지>** 본 법인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를 비롯하여 어떤 이유로도 환급되지 아니하고, 본 법인에 귀속된다.

## 제 5 장 보 칙

**제48조 <법인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>**

1.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임이사회 2/3이상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 회 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2. 본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
**제49조 <정관개정>** 이 정관 개정 시 개정(안)을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후 총회에 제출 하여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/3 찬성으로 의결하여 개정한다.

**제50조 <시행세칙>** 본 법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상임이사회 의결로 정한다.

**제51조 <회의성립과 의결>**

1. 각급회의는 재적 과반수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 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
2. 단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① 본 법인의 해산 및 합병
- ② 기본재산의 처분

**제52조 <준용>**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민법 중 사단법인에

관한 규정 및 행정자치부장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#### 경과조치

1. 최초 회계 연도 이전 임원은 임원의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.

#### 부 칙(2016.7.15)

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